

G-Welfare Brief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발행인 : 진석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s://ggwf.gg.go.kr>

vol. 07

2019.09.19.

ISSN 2671-717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과 개선 방안

요약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 현재 9,652건에 약 5조 4백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비중이 가장 높음
 - 민간위탁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이후 도입
 - 분야별로 민간위탁사업의 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조3백억 원(41.5%)으로 가장 많고, 환경보호 분야 2조24백억 원(30.6%), 문화·분야 5천6백억 원(7.7%) 순으로 나타남
-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핵심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등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5,495개소 중 4,305개소(78.3%)가 위탁 운영이고 1,190개소(21%)가 직영이고, 경기도는 3종 복지관의 약 92%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 시·군의 조례와 규칙은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위탁 운영의 기준과 방법을 찾기에 어렵고,
 - 둘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2.9%에 불과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 셋째, 수탁 신청자가 시설을 운영하기 적절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 넷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 신규위탁과 재계약의 구분이 없이 기준과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권고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정 사전공개와 수탁자 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해촉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
 - 수탁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 사회복지시설 위탁 업무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안 제시와 정례적인 교육과정 운영

I.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이후 도입
 - 1980년대 이후 영국·미국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팽창으로 인한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작은 정부와 성과주의가 강조되면서 정부가 직접 계획, 공급하던 공공서비스가 민간 영역으로 이전되고, 제3섹터, 비영리조직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남
 - 지방정부는 서비스 표준에 기초해 서비스를 설계하고 공급을 조직화하며 서비스 제공의 위탁자로 역할 전환
 -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정부의 효율성 추구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창출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채택하면서 보수당 정부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서비스 외주화(out-sourcing)를 추진
 - 정부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3섹터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민·관파트너십 확대
 - 우리나라는 IMF 위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국정관리 방식을 쇠신하고자 행정개혁 시도하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
 - 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정부 내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해당 기능이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재정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표 1〉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배경

등장배경	촉발 요인	방법 및 수단
민영화의 시대적 조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 규제, 지도 중심에서 조정·보완으로 변화	- 시장경제원리의 작용 -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행정기능의 비대화과 자성적 비판	- 행정범위 확대, 조직 확장, 공무원 증가 - 역기능 심화, 관료제 확대	- 정부의 구현 - 행정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 민간자원의 활용·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	- 제정압박 심화 - 행정수요 급증	- 서비스 기능의 제고 - 단순기능 위탁→운영전반 위탁

자료 : 행정자치부(2004)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 현재 9,652건 약 5조 4백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비중이 가장 높음
 -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단체의 기관에 맡겨 그의 책임아래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¹⁾을 의미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
 - 240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등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있어야 함
-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9,652건(광역시 1,005건, 기초 8,647건)의 민간위탁이 약 5조4백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비율은 높지만, 사업별 평균예산은 줄어드는 현상을 보임

〈표 2〉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사업 수	사업 총 예산	사업별 평균예산
전 국	9,652	5,042,669	522
특·광역시	289	213,799	739
도	716	1,106,407	1,545
시	3,161	1,656,963	524
군	2,442	695,486	290
구	3,044	1,342,511	441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2018)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분야별로 민간위탁사업의 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조3백억 원(41.5%)으로 가장 많고, 환경보호 분야 2조24백억 원(30.6%), 문화·분야 5천6백억 원(7.7%) 순으로 나타남²⁾

[그림 1] 민간위탁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2018)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634호
2) 2014년 민간위탁 사업 예산 7조3천억 원 기준

II.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 시·군의 자치법규이며, 민간위탁 비중은 전국의 경우 80%, 경기도의 경우 92%에 달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
 - 지방자치단체가 “갑”이 되고 법인이 “을”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공급 결정과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 권한을 민간에 이전
 - 법적으로는 위탁자인 지방정부가 여전히 권한을 보유하면서 수탁자인 민간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하는 방식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준용되는 법률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시·군별로 자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성을 보완
 - 보건복지부 지침은 법률에 따른 근거와 수탁자 심사를 위한 심의기준 및 배점,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지표에 대한 안내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선정과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상황
 - 경기도 31개 시·군 중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통합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5개 시·군에 불과하여 시설의 설치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내용의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은 많고, 그 내용도 편차가 큼
 - 각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담당 부서가 다르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
 - 보건복지부 통계³⁾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5,495개소 중 4,305개소(78.3%)가 위탁 운영이고 1,190개소(21%)가 직영되고 있음
 - 총 시설 수에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비중을 시설 유형별로 보면, 지역자활센터(95.6%), 사회복지관(66.4%), 노숙인시설(3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위탁 비중을 보면, 노숙인과 결핵 및 한센시설이 100%로 가장 높고, 장애인분야(97.1%), 지역자활센터(95.6%), 노인분야(93.0%), 사회복지관(91.7%) 순으로 나타남

3) 보건복지부(2018),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3〉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 구분

(단위 : 개소)

구분	총 시설 수	지방자치단체 설치 / 운영 시설			민간 설치 / 운영 시설				
		소계	직영	위탁	소계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인	법인 외 단체	개인
계	59,536	5,495	1,190	4,305	54,041	6,276	4,621	554	42,590
노인	9,428	941	66	875	8,487	2,351	1,006	67	5,063
아동	5,092	155	20	135	4,937	668	691	303	3,275
장애인	3,507	596	17	579	2,911	1,535	967	11	398
정신보건	398	11	2	9	387	171	78	2	136
노숙인	153	49	0	49	104	44	36	7	17
결핵 및 한센	7	1	0	1	6	4	2	0	0
지역자활센터	249	249	11	238	0	0	0	0	0
사회복지관	464	336	28	308	128	111	17	0	0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2018),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별 통계, 보건복지부

- 2019년 6월 현재 경기도에 사회복지관 81개소, 노인복지관 59개소, 장애인복지관 37개소 등 총 177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91.5%인 162개소가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
 - 사회복지관 81개소 중 지방자치단체 직영 1개소, 법인의 직접운영 10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 운영되고 있고, 수탁기관의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45개소, 학교법인이 7개소, 재단법인이 7개소, 사단법인이 5개소 운영
 - 장애인복지관 37개소 중 지방자치단체 직영 1개소, 법인직영 1개소를 제외하고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운영주체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23개소, 재단법인이 7개소, 사단법인이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음
 - 노인복지관은 2019년 6월 현재 총 59개소이며 지방자치단체 직영 1개소, 법인직영 1개소를 제외한 42개소가 사회복지법인, 4개소는 학교법인, 8개소는 재단법인, 3개소는 사단법인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음

[그림 2] 경기도 3종 복지관의 운영 현황



[그림 3] 운영주체와 민간위탁 대상



-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핵심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의 구체성 미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 수탁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수탁선정 기준과 배점의 비타당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1. 조례 및 규칙의 구체성 미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 시·군의 조례와 규칙은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위탁 운영의 기준과 방법을 찾기에 어려운 상황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한 ‘개별조례’가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를 준용하거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활용
 -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21조의2 및 「00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0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기준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⁴⁾을 제시하였으나 복지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선정 시 마다 편의대로 운영하거나 내부결재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⁵⁾
 -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절차 마련을 권고하였으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25개(92.6%)가 사전 적정성 검토를 세부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계약 담당자인 공무원들은 민간위탁 업무 시에 규정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선정과정이 단계별로 자세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⁶⁾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공개모집’이 의무조항이지만 예외 조항으로서 필요한 경우 재위탁(재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부분이 재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시설 유형별 조례가 따로 있고 사무위탁조례와 적용의 충돌이 일어나며 구체성은 미흡
 - 조례가 있음에도 위탁기간 조차 미규정된 시·군이 있고, 재위탁(재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의기준, 운영 사후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위탁자와 수탁자가 첨예하게 갈등하거나, 재계약에 대한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함

4)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사전공개, 선정위원회 이 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이의신청 절차 마련,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위탁 취소사유 명시 등을 골자로 함

5) 사전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없음 (92.6%)로 조사되었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6) 경기도 시설 담당 공무원 서면 의견조사 결과 참고

〈표 4〉 경기도 시군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조례의 조항 분석

지역명	선정) 기준	수탁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성과 평가	재위탁 또는 재계약
		구성	비율	자격	제척 제도			
수원시	X	O	O	X	X	X	X	X
성남시	X	O	X	X	X	X	X	O
부천시	X	X	X	X	X	X	X	O
용인시	O	O	O	X	X	O	O	O
안산시	X	X	X	X	X	X	X	O
안양시	X	O	X	X	X	X	X	O
평택시	X	X	X	X	X	X	X	X
시흥시	X	X	X	X	X	X	X	O
화성시	O	O	X	X	X	O	O	불가
광명시	X	X	X	X	X	X	X	O
군포시	X	X	X	X	X	X	X	O
광주시	-	-	-	-	-	-	-	-
김포시	X	X	X	X	X	X	X	O
이천시	-	-	-	-	-	-	-	-
안성시	-	-	-	-	-	-	-	-
오산시	X	O	O	X	X	X	X	O
하남시	X	X	X	X	X	X	X	O
의왕시	X	X	X	X	X	X	X	O
여주시	-	-	-	-	-	-	-	-
양평군	X	X	X	X	X	X	X	X
과천시	X	O	X	X	O	X	X	O
고양시	X	O	X	X	O	X	O	O
남양주시	O	X	X	X	X	O	X	O
의정부시	X	O	O	X	O	X	X	O
파주시	X	O	O	X	X	X	O	O
구리시	X	X	X	X	X	X	X	X
양주시	X	X	X	X	X	X	X	X
포천시	X	X	X	X	X	X	O	O
동두천시	-	-	-	-	-	-	-	-
가평군	-	-	-	-	-	-	-	-
연천군	X	X	X	X	X	X	X	O

*X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O는 “명시되어 있음”, -는 해당 없음
조례에 수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기 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 한다” 정도로 명시됨

2. 위·수탁심의위원회 구성의 불명확성

- 최근 관련 연구에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 및 개관성 문제를 가장 큰 문제 (54.8%)로 지적하는 등 위수탁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감을 가짐⁸⁾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2.9%에 불과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7) 보건복지부 지침, 경기복지재단 지표, 자체 작성 지표 모두 포함

8) 공창숙(2011),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심의위원의 전문성 부재,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이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함으로써 나타나는 영향력 혹은 지방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약⁹⁾
 - 복지부의 안내에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1/2 이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 제안이 지켜지지 않고 위원 구성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는 것이 문제
 - 신규위탁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드물고 제척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담당공무원들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과 절차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3. 수탁자 선정 기준과 배점에 대한 타당성 확보 미비

- 수탁 신청자가 시설을 운영하기 적절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인력의 구성과 자격 여부,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계획과 과정 및 평가의 능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의 수정이 필요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예시나 시·군에서 직접 작성하는 기준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타당성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음
- 공무원 대상 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지침”,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심의지표”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공신력 있는 기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 신규위탁과 재계약의 구분이 부재

- 보건복지부 지침에 제시되는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은 법인의 건전성, 시설 운영 능력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최초 수탁자를 결정하는데, 비교적 공정성을 기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 ‘법인의 공신력’ 혹은 ‘운영능력’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적합한 검증은 도구가 부실하고
 - 수탁자 모집 범위를 대부분 해당 시·군이나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홍보 기간도 약 2주 정도로 짧고, 모집 공고에 수탁실적, 수상실적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면 신규 법인은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

9) 신용규(2017), 위수탁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의 왜곡

능력 등을 파악해야 하나, 수탁희망법인이 제출한 문건만으로 실제 운영에 대한 건실성을 검증하기에는 서면평가의 현실적 한계가 있음

- 사전 심사와 현장실사 등이 없으며, 심의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표 5〉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단계별 문제점 요약

단계	업무내용	고려사항	문제점
위탁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여부 결정 · 위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성: 선정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함. ▶ 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는 누구에게나 기회 제공 ▶ 전문성: 전문적인 운영 평가가 가능 ▶ 수탁체 자격요건, 선정방법,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상세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위탁 기준 부재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견제 기능 미흡
↓			
위탁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 · 설명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심사기준 제공)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선정기준설정 ·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개시 시점으로부터 6개월 공모 ▶ 접수기간 최소 1개월 ▶ 홈페이지공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 일간지공고(중앙지, 지방지 각 1회) ▶ 사회복지협의회 공지 ▶ 설명회 개최를 통해 위탁추진 배경, 수탁 조건 등 명료화 ▶ 설명회 직후부터 신청서 교부 ▶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병행 ▶ 전문성, 중립성, 비공개성 원칙: 이론적, 실천적으로 전문성 확보, 정치적 이거나 연고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 선정 위원 비공개. ▶ 심의위원회 소집 최소 1주일 전 확정 ▶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3인 이내(위원장 포함) - 실천전문가 1인 (시설 중간관리자 급) - 법률전문가 1인 (공인회계사 등) - 관련 단체 관계자 1인 (수요자 대표) - 시민단체 대표 1인 (복지관련, 시의원 제외) - 순수전문가 2인 (교수, 연구자 등 학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자들로 구성(전문가 인력 Pool을 구성하여 무작위 차출로 활용). ▶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심사 → 서류심사 → 사업설명회 → 현장방문 → 면접 ▶ 선정결과 공표 ▶ 이의신청 절차 안내 및 접수 ▶ 약정서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종사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문제 · 수탁자 선정기준 등의 공개 규정 부재에 따른 투명성 문제 · 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 참여 등에 따른 심의의 불공정 문제 · 이의신청절차 부재로 당사자의 행정절차 참여 보장에 미흡
↓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또는 수시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서비스 성과, 시설관리에 대한 관리 ▶ 위탁 당시의 사업계획서 이행 정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확보, 프로그램 구성, 자부담 이행 등 ▶ 현장 사회복지사, 공인회계사 등 공무원 이외의 다수자를 지도 감독팀으로 구성운영 ▶ 선정심사위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미흡 ·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부재에 따른 사후관리 부실 ·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절차 부재 · 위탁 취소 근거의 부재로 수탁기관에 대한 재제 미흡

- 재계약 심의의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는 법인의 운영 능력 확인과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재계약 심의 기준이 없어 신규위탁 심의 기준이 활용되고 있으나 신규위탁과 재계약은 반드시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일상적인 지도점검과 정기적인 평가결과가 재위탁 심사와 연계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심의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운영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III. 정책 제언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권고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권고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
 -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고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 하므로써 효율성과 공정성 담보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중인 ‘민간위탁 기본조례’ 또는 사무에 따른 ‘개별 조례’ 등에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을 반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명시하는 한편,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조례에 규정

□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사전공개와 수탁자 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해촉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 공개 규정을 추가하여 신청자가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도록 유도
 - 수탁자 선정 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공헌력 등 등급적이면 간소하게 하고, 각 기준별로 구체적인 심사항목을 마련

- 배점도 각 기준별로 균등하게 하여 한 가지 기준으로 수탁자의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또한 선정기준은 신규와 재위탁으로 구분하여 제시
-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은 정보공개 청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공고문에 표로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등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 마련
- 수탁자 선정기준 조항과 연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1인을,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선정
 - ②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 수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
 - ③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참여를 배제
 - ④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 ⑤ 선정심의위원이 심사 대상기관과 혈연·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제도 마련
- 상기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했음에도 이의가 있을 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도 조례에 규정

□ 수탁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 시·군의 지도·점검 또는 법령에 의한 평가결과를 위탁 시 사후관리 및 평가와 연동하여 활용하고, 동일 수탁자에게 시설을 재위탁할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마련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재계약·재위탁 등 연속으로 위탁하는 비율이 높아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사후성과평가가 중요함에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로 대체하거나 사후성과평가를 실시 및 활용을 명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실제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75.3%에 달함¹⁰⁾
- 동일 수탁자에게 시설을 재위탁할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위탁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용 도모

10) 국민인권위원회 실태조사

- 수탁자의 주요계약 사항 위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므로 위탁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 위·수탁 계약서에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외 위탁의 취소 기준이 되는 근본적인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도록 함
 - 수탁자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시설 운영 중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확히 규정

□ **사회복지시설 위탁 업무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안 제시와 정례적인 교육과정 운영하여 민간위탁업무의 일관성 도모**

- 시·군별, 각 부서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들의 공통 사항을 포괄하고 개선방안을 담아 표준안을 마련
 - 표준조례(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 사항과 신규위탁, 재위탁(재계약)을 위한 심의기준안을 포함하여 활용도를 높임
 - 신규위탁 / 재계약시 사용할 수 있는 수탁자심의기준을 제안하여 시군이 활용·응용하게 함
-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 수탁자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 안을 경기도가 마련하여 시군에 제공
 - 실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계약서 사례를 수집하여 표준안을 작성하고 시·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
 - 첫째, 위탁기관과 수탁자의 상호입장을 고려한 방향성 전환
 - 둘째, 필수 계약사항에 대한 제안을 의무화 하는 등 변화 반영. 예를 들어, 종사자 고용승계는 “ ~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를 “ ~ 해야한다 ” 로 수정하는 방식
 - 셋째, 조례 내에 적시되어 있는 준수사항을 구체화
- 시설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 교육과정을 준비하여 정례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
 - 경기도에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민간위탁관련 과정을 마련, 실무자에 따라 민간위탁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